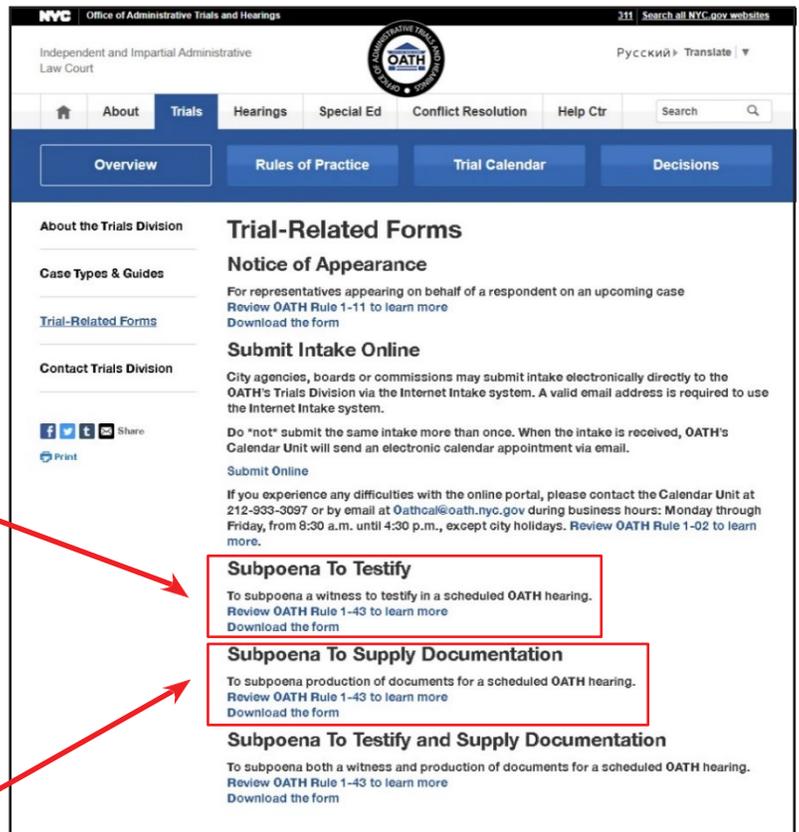


1 귀하가 직접 변호하는 경우 공인 변호사 또는 경험 많은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동일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온라인 <https://www1.nyc.gov/site/oath/trials/rules-of-practice.page> 에서 행정심판청(Oath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, OATH)의 실천 규범(Rules of Practice)을 읽고 숙지할 수 있습니다.

2 귀하는 변호사가 있는 사람과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. 각 당사자는 재판 시작 시 모두 진술권이 있습니다. 또한 재판 마지막에 기록이 종료되기 전 최종 진술권도 있습니다. 판사가 허락할 경우 재판 종료 후 최종 변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판사가 허락할 경우 최종 변론서 제출 기한이 주어질 것입니다.

3 귀하는 증인을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. 증인이 재판 참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증인 소환장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하여 증인이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소환장 양식은 OATH 웹사이트 <https://www1.nyc.gov/site/oath/trials/trial-related-forms.page>에 있습니다(“Subpoena To Testify” 로 가십시오). 판사가 소환장에 서명하면 귀하는 해당 소환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.



4 귀하는 행정법 판사에게 상대방 또는 제삼자 문서 지참 증언 소환 영장 또는 문서 소환장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. 행정법 판사가 서명하면 해당 당사자는 재판 시 또는 재판 전에 문서 또는 기타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. 판사가 소환장에 서명한 후 귀하는 귀하가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소환장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 양식도 OATH 웹사이트 <https://www1.nyc.gov/site/oath/trials/trial-related-forms.page> 에 있습니다(“Subpoena to Supply Documentation” 으로 가십시오).

- 5 재판 중 귀하는 증인을 직접 심문할 수 있으나, 소송 주장 및 방어와 관련 있는 질문만 할 수 있습니다. 각 당사자는 원하는 증인에게 질문하고 반대 심문할 기회가 있습니다. 귀하는 또한 상대방이 증인에게 물어본 질문에 반대 이유를 댈 권리가 있습니다. 귀하는 상대방이 특정 문서 또는 기타 자료를 사용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 이의가 제기되면 판사는 누가 옳고 무엇이 재판 기록에 들어갈지 결정합니다.
- 6 귀하는 직접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. 귀하는 서술 형식으로 증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대우받을 것입니다. 이는 귀하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상대방 변호사와 판사는 귀하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. 귀하는 증언에 도움이 될 메모 또는 요약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
- 7 귀하는 수정 헌법 제5조에 따라 증언으로 유죄임이 드러날 수 있는 경우 증언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귀하가 OATH에서 증언하지 않는 경우 OATH 판사는 증언하면 귀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
- 8 귀하는 판사에게 문서 또는 기타 서류 증거를 재판 기록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. 증거를 내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줄 증거를 복사해와야 합니다. 반드시 증거로 제시할 사본과 증인용 사본을 준비하십시오. 본인용 사본도 가져와야 합니다. 비디오로 참석하는 경우 증거를 판사와 상대방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전자 형식(서류 또는 증거 사진 등)으로 준비하십시오.
- 9 언제라도 생각이 바뀌어 변호사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알려주십시오.
- 10 귀하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OATH 판결은 OATH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웹사이트 <https://www.nyc.gov/site/oath/trials/search-decisions.page>를 방문하십시오.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.